

“친환경 건축자재 시공비 부담없다”

환경부, 새집증후군 예방시 평당 5만원 추가 ... 분양가 인상근거 없어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나타나는 피부염과 천식 등 이른바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추가되는 공사비는 평당 최고 5만원 선에 그치거나 심지어 최고 4만원까지 줄어든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가 건설업계 기술·품질 협의기구인 한국건설경제협의회에 의뢰해 아파트 신축 때 일반 자재와 친환경 자재의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벽지와 바닥재, 주방, 창호 등 집안 내부 곳곳에 올레핀계를 비롯한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면 평당 5만3674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32평형 1세대에 적용하면 추가 공사비는 총 171만원에 그치는 셈이다.

최근 한 건설회사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33평형을 기준으로 친환경자재 사용 때 추가 공사비가 평당 3-4만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월 중순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친환경 자재 사용으로 대폭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조사를 의뢰했다.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는 합판, 바닥재, 벽지, 페인트, 접착제 등 각종 건축자재에 대해 포름알데히드(HCHO)와 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등 오염물질의 방출 정도에 따라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건축자재 표면에는 오염물질 방출정도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1>, <일반2> 순으로 등급이 매겨지고 각각 네일 클로버 5개, 4개, 3개, 2개, 1개로 등급이 표시되고 있다.

환경부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역대 단위로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 조사를 통해 공사비가 그다지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분양가 책정은 건설회사들의 고유 권한이지만 친환경자재를 사용했다고 분양가를 크게 올리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2004/03/31>